

大田直轄市青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議案 番 號	315
-----------	-----

提出年月日 : 1993. 11

提 出 者 : 大田直轄市長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青少年基本法制定(1991.12.31, 法律 第4477號)및 同法施行令
(1992.12.31, 大統領令 第138114)이 '93年 1月 1日부터 施行 됨
에 따라 그동안 青少年育成法令에 의거 制定 施行된 大田直轄市
青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를 廢止하고 青少年基本法令에 의
거 地方青少年委員會를 構成 運營코자 함.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직할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기본법 관련 조문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①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각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장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인이상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위원)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체육청소년부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③지방청소년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13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大田直轄市 靑少年 育成地方委員會 運營條例 廢止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3. 11. .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3. 10. 27.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1993. 11. 1.

다. 上 程 日 字 : 第 27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1次 文教社會委員會 (93. 11. 3)

上程,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家庭福祉局長)

1. 提 案 理 由

靑少年 基本法 制定(1991. 12 31, 法律 第4477號)및 同法施行令
(1991. 12. 31, 大統領令 第 138114)이 '93年 1月 1日부터 施行 됨
에 따라 그 동안 靑少年育成法令에 의거 制定 施行된 大田直轄市

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를 廢止하고 靑少年基本法令에 依據 地方靑少年委員會를 構成 運營코자 함.

2. 主要 骨子

「大田直轄市 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는 이를 廢止함.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 鎮鎬)

- 本 案件은 靑少年 育成業務에 관한 事項등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靑少年 育成法 第8條 3項 및 同法 施行令 第5條의 規定에 依據 設置·運營하여 왔던 「大田直轄市 靑少年 育成 地方委員會 運營條例」를 廢止하고 靑少年 基本法 第13條 및 同法 施行令 第7條의 規定에 依據 「地方靑少年 委員會」를 構成·運營코자 하는 內容이 되겠음.
- 이는 지난 '93. 8. 25. 第25回 臨時會 第1次 當 委員會에 上程, 留保되어 第26回 臨時會 第1次 委員會에서 撤回된 바 있는 「大田直轄市 靑少年 育成 地方委員會 運營條例 改正條例案」과 脈絡을 같이 하는 內容인 바, 靑少年 育成등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地方靑少年委員會는 靑少年 基本法등 關係法令에 依據 直接 構成·運營한다는 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

IV. 討 論 要 旨 : 省 略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VI. 審 查 結 果 : 原 案 大 로 可 決

V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